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7
----------	------

발의연월일 : 2023. 3. 27.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박주용 의원,  
박영동 의원

## 1. 제안이유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규정(안 제4조)
-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설치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바. 미설치 또는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수도법」 제15조·제8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

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관한 그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절수설비 등급표시 확인서
5. 현장설치사진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도법(법률)」 (2021.7.20. 타법개정, 2022.7.21. 시행)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